

# 위반행위 신고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·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 앞 쪽 )

|      |      |
|------|-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시 |
|------|------|

|     |    |               |
|-----|----|---------------|
| 신고인 | 성명 | 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 |
|     | 주소 | (휴대)전화번호      |

[illegible]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.

이  
이  
이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신고인<br>제출서류 | 뒤쪽 참고 | 수수료<br>없음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

신고인  
제출서류

계약서, 거짓신고 합의서, 입출금내역서, 진술서, 확인서, 당사자간 의사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우편, 통화기록, 팩스 수·발신 기록, 수첩 기재내용 등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

## 유의사항

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확인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·통지하게 되며, 조사에 따른 시간의 소요에 따라 통지 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## ※ 포상금 지급사유

1.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
2.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서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
3.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한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

## 작성방법

1.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2. ①"신고유형"란에는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토지거래허가 위반유형에 대해 해당사항을 체크합니다.
3. ②"신고대상자(위반행위자)"란에는 위반행위를 한 대상자를 적습니다.
4. ③"신고행위(위반행위) 내용"란에는 구체적인 신고행위의 행위자, 장소, 시간, 위반행위 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적습니다.

## 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

→

접수

→

조사

→

포상금 지급여부  
결정 및 통지

→

포상금  
지급신청서  
제출

→

포상금 지급

신고인

처리기관: 시·군·구 (부동산·토지거래업무 담당부서)

신고인